

영등포구의회
제13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
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3. 31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
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
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
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3. 20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신체장애 및 사회편견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65세이
상 노인, 한부모가정,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에게 생계를 유지할
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에 기
여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게재 등 공고토록 함(안 제3조)
-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5조)
- 장애인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수탁의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6조, 제8조)
- 신문판매대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)

■ 관련법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
-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종로구, 중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금천구, 강북구, 양천구, 구로구, 관악구, 송파구 등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한부모가족지원법,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·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**안 제1조는**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**안 제2조는**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,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였고,
- **안 제4조는**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·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별도로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,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한자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.
- **안 제5조, 제6조는**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·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고 해당자들 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2급이상의 장애자의 경우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●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 내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※ 참고로 2008년 3월 현재 우리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 현황을 보면 신문·복권판매대는 없으며, 매점 1개소, 자동판매기 38대로 파악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3. 31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관 련 법 령

■ 장애인복지법

- 제42조 (생업 지원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·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.
-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■ 노인복지법

- 제25조 (생업지원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■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15조 (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■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

제16조의2 (생업지원) ①국가,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